

#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신설) 안내

## 1 신설배경

- 사고사망 발생 빈도가 높은 전동식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규정\*\*
  - \*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4의2(시행 '21.1.16.)
-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물류센터, 방문판매업 등의 다양한 사업장·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 시기 유예와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규정 마련 예정
- 특례규정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 20.12월~1월 중)이며, 해당 규칙 개정 전이라도
  - 사업장에서 원활한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도록 「지게차 조종전문 교육 과정」을 마련·시행

### <현 행>

<p><b>&lt;조종자격 시행시기&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16.부터 시행</li> </ul> <p><b>&lt;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li> <li>②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li> </ul>
--

### <개 정(예정)>

<p><b>&lt;조종자격 시행시기&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7.16.부터 시행(6개월 연장)</li> </ul> <p><b>&lt;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li> <li>②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li> <li>③ 유경험자(운전면허+3개월 조종경험)로서 안전보건공단의 사이버교육(2시간)을 이수한 사람('21.7.15.까지)</li> </ul>
--

## 2 교육과정 내용

---

- (교육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전동식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
  -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전동식이고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
    -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포크, 램(ram)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지게차
- (신청자격) 사업장에서 지게차 조종작업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외)를 소지한 자
- (이수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이수 (2시간/무료)
- (이수기간) 1차 : 2020.11.16. ~ 12.20, 2차 : 2021.1.1. ~ 7.15.까지 이수
- (교육내용)
  - ① 지게차 개요 및 기본 안전수칙
  - ② 지게차관련 재해현황 및 법령
  - ③ 사례로 보는 지게차관련 사망사고(I)
  - ④ 사례로 보는 지게차관련 사망사고(II)
  - ⑤ 지게차의 작업안전 확보

## 3 교육신청 절차 및 방법

---

- (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이러닝 (자격)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

교육대상(예시)

교육비대상(예시)



좌식 지게차



입식 지게차



보행식 지게차



전동 이동식 스택어



수동 이동식 산토카



수동 이동식 스택어



전동 이동식 팔레트 대차



수동 이동식 팔레트 대차

인터넷교육센터 접속

↓ “회원가입” 클릭

본인인증

↓

로그인

↓

인터넷 교육과정 수강신청

↓

인터넷 교육 수강

↓

수료증 출력

www.safetyedu.net

휴대폰 인증, 범용공인 인증 등

아이디/비밀번호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

과정명 : (자격)지게차조종전문교육 과정(해당지역 구분)

(자격)지게차조종전문교육 수강 및 수료

①강의실 입장 → ②대리수강방지 동의 →③학습하기

인터넷교육센터 수료증 출력

※ 교육대상 신청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지게차 3개월 이상 유경험 경력 증명서(붙임)를 보관하고 → 교육 이수자는 이수증을 사업장에 제출

**Q1. 지게차 조종 시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A1. (건설기계 지게차, 번호판 있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 번호판 없음) ①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②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③유경험자의 경우 '21.7.15.까지 안전보건공단의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인터넷교육 2시간)을 이수한 사람(「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Q2.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 조종 유경험자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A2.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게차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분(운전면허 소지)들에 한해 '21.7.15까지 공단 인터넷교육센터  
 (www.safetyedu.net)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인터넷교육 2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신청 시 3개월 이상 유경험자 확인방법은?**

A3. 교육신청자는 소속된 회사(전근무 회사 경력증명서 포함)에서 지게차  
 운전 경력증명(붙임 양식)을 확인받은 후 인터넷 교육을 신청하시고  
 교육 이수 후에는 해당 회사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 보관서류 : 경력증명서 + 교육 이수증)

**Q4. 조종 경력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4. '21.7.15까지 3개월 이상 조종 경험을 쌓고 공단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중장비학원 등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Q5. 건설기계 아닌 지게차 교육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5.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건설기계관리법」에 해당하는 지게차  
 교육(12시간 집합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2시간) 이수증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Q6. 지게차 조종전문교육(유경험자)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6. 가. 지게차 종류별 교육대상 여부 등 문의(052-703-0617~9)  
 나. 지게차 인터넷 교육 신청방법 및 전산문의

문의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문의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강원	서울광역본부	02-6711-2914	대구·경북	대구광역본부	053-609-0570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본부	051-520-0557	광주·전라·제주	광주광역본부	062-949-8718
인천·경기	인천광역본부	032-510-0646	대전·세종·충청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73

[붙임]

## 경력증명서

### 사업장 현황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팩스번호	

### 경력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용도			
재직기간	. . ~ . .	지게차 운전기간	. . ~ . . (년 월)
담당업무			

위 사실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    0000    [인]